

울진군노인요양원 급여비용 변경 안내문

◇ 시설급여 (1일)

구 분				1등급	2등급	3,4등급
				65,190	60,490	55,780
급 여	노인요양시설 (개정법)	일 반	변경전	11,866원	11,012원	10,154원
			변경후	13,038원	12,098원	12,098원
		차상위 /경감	변경전	5,933원	5,506원	5,077원
			변경후	6,519원	6,049원	5,578원
비 급 여	상급침실 이용료			해당사항 없음		
	식재료비(간식비 포함)			1일 7,500원		
	이/미용료 등			본인이 별도로 희망하는 서비스로 발생하는 비용은 자부담한다.		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「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◇ 세부내역(30일 기준)

구분	항 목		내 용				합계①+②	
			금액 (1일 기준)	금액 (월30일기준)	①본인부담금 (월30기준액20%)			
장 기 요 양 원 인 부 담 금	일 반	1등급	65,190	1,955,700원	391,140원	변경후	616,140원	
						변경전	580,980원	
		2등급	60,490	1,814,700원	362,940원	변경후	587,940원	
						변경전	555,360원	
		3,4등급	55,780	1,673,400원	334,680원	변경후	559,680원	
						변경전	529,620원	
	차 상 위 / 경 감	1등급	상 등			195,570원	변경후	420,570원
							변경전	402,990원
		2등급				181,470원	변경후	406,470원
							변경전	390,180원
		3,4등급				167,340원	변경후	392,340원
							변경전	377,310원
	기초생활수급자		무 료				임소이용신청서 제출 및 전입신고(매화면사무소)	
비 면 여 금 및 개 별 적 희 망	식·간식비		②월 225,000원 (7,500원*30일)				기초생활수급자 무료 (주부식비는 시설생계비로)	
	개별적희망		특별침실				해당사항없음	
			이·미용비					
			개인물품구입 및 개인욕구에 의한 외식, 온천 등					

〈 (안내)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〉

구분	시설급여	재가급여
일반	20%	15%
기타 의료수급권자,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,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 자)	10%	7.5%
기초수급권자	0%	0%

※ [근거규정]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제40조(본인일부부담금)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.
다만, 수급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
2. 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

※ 올진군노인요양원은 ‘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’ 변경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상기와 같이 변경하게 되었음을 보호자님들께 알립니다.

기관에서는 시설급여 인상을 결정하고 있지 않으며 비급여 사항만 요양원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.

올진군노인요양원장